가. 림프조혈기계암

1. 제철소 배관 관리업무자에서 발생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

성별	남성	나이	만 50세	직종	배관공	직업관련성	높음
----	----	----	-------	----	-----	-------	----

1 - 개 요

근로자 ○○○은 1995년부터 2011년 7월 11일 만성골수성백혈병 진단받는 시점까지 약 16년간 주로 ◇제철소 내 현장에서 일용직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속으로 ◇제철소 내 제철관련설비 정비, 공사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벤젠, 1,3-부타디엔과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상기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2 ~ 작업환경

근로자는 1995년부터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은 2011년 7월 11일까지 약 16년간 주로 ◇제철소 내 코크스 화성, 제강, 소결 등 다양한 공정에서 일용직 배관공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작업 당시 현장 및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고용보험이력내역서 공사현장명과 □사업장 소속 주요 공사 실적, 근로자 진술 자료를 바탕으로 작업공정 및 수행직무를 기술하였다. 근로자 진술에 의하면 ◇제철소 내 코크스 화성, 제강, 소결 등 다양한 공정에 투입되어 일용직 배관공으로 노후화된 배관을 철거하고 교체하는 작업과 핸드레일 안전시설물 교환 등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작업 수행 시 용접공이 용접을 할 수 있도록 배관을 미리 잘라 맞추어 두었고 직접 용접과 가접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배관을 철거하면서 나오는 기름과 찌꺼기를 처리하고 배관을 나르는 작업도 수행하였다. 또한 배관에 페인트를 칠하였고, 배관을 세척하기 위해 세척제를 사용하였다. 이 때 보호구로 마스크를 지급받지못하여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일용직으로 당일 작업 지시에 따라 작업장소와 작업환경이 달랐으며 실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해부학적 분류

- 림프조혈기계암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1년 5월경부터 좌측 옆구리의 만져지는 덩이와 간헐적 통증이 있었으며 6월 시행한 초음파검사에서 비장 비대가 확인되었다. □병원에서 백혈구증다증이 확인되었고, 2011년 7월 11일 ◇병원에서 실시한 골수검사에서 BCR/ABL1 rearrangement 검사에서 재배열이 관찰되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 받았다. 과거 건강검진 문진표의 문답들과 의무기록 등의 정보가 일관되지 않아 질의를 통해 받은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2021년부터 고혈압으로 투약중이며, 혈압조절은 잘 된다고 하였다. 이외에 백혈병과 관련된 질병력, 가족력은 없다고 하였다. 음주는 주1회 소주1병 정도이며, 25세부터 32세까지 하루 10개피 정도의 흡연(약 3.5-4갑년)력이 있다고 하였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남, 1961년생)은 만 50세가 되던 2011년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1995년부터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은 2011년 7월까지 약 16년간 주로 ◇제철소 내 코크스 화성, 제강, 소결 등 다양한 공정에서 일용직 배관공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근로자가 노출 될 가능성이 있는 상병의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벤젠이 있다.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는 벤젠을 인간에게 확실한 발암물질(Group1)으로 분류한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직업적요인 중 포름알데히드, X선, 감마선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벤젠은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근로자는 과거 보고서 및 측정자료를 참고하였을 때 ◇제철소 내 코크스, Finex 공장 등에서 일용직 배관공(조공)으로 근무하면서 벤젠에 지속 노출되었으며, 최대노출값이「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초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끝.